

# 정간법 개정안과 중재제도의 개선

양 삼 승

법무법인 화우 대표 변호사

## I. 개정안에 이르기까지의 역사

1. 우리나라 언론중재제도의 도입은 1980. 12. 31. 언론기본법의 제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위법에서 표현은 비록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옷을 빌려 입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반론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었고, 이로써 우리나라 언론법제에 새로운 시대가 개시되었다.

이후 언론중재제도는 그 출생의 과정에 의심을 받아, 어려운 시절을 겪었으나, 순수한 뜻을 가진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기초를 탄탄히 다져왔다. 그러던 중 1987년 민주화 과정에서 언론기본법 자체는 폐지되었으나, 언론중재제도 및 그 근간인 반론권 제도는 살아남아 1987. 11. 28. 정간법의 일부로 흡수되게 되었다.

그 이후 약 10년 동안은 실무자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의 결과로 실질적인 성장을 거듭하였으며, 국민들에게 반론권 내지는 언론중재의 개념이 익숙해지도록 하는 데에 기여해 왔다.

이와 같은 장기간의 노력의 결과는 1996. 7. 1.의 법개정으로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가장 큰 결실은 “반론보도”라는 용어가 정식으로 법률용어로 채택되어 그 몸에 맞는 옷을 비로소 입게 되었으며, 정정보도청구에 대하여도 선택적으로 중재대상으로 할 수 있게 하였고, 직권중재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재제도를 실효성 있게 하였다.

이 개정법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재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2. 모든 조직이나 제도의 성장·진화하는 과정이 그러하듯이, 우리나라 언론중재의 역사도 이제 20년을 훨씬 넘어 성년기에 들어서게 되면서, 그 동안의 경험이나 연구성과에 비추어 좀더 나은 제도를 위한 생각이나 바람이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재위원회는 2000년에 그동안 축적되어온 지혜와 경험을 모아 가칭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입법론적 방안이라는 주제로 연구발표회를 가진바 있고, 그 결론으로서 “언론피해구제법”(안)을 만들어 발표한 바가 있었다.

3. 그러나, 위 가안이 입법으로까지는 이어지고 있지 못하던 중 국회에서 2002. 2. 8. 국회의원 27인(대표발의 심재권 의원)의 발의로 정간법 개정법률안이 마련되었고 이를 토대로 하여 2003. 5. 29.에는 위 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까지 개최되었다.

그리하여, 국회에서 정식의 개정법률안이 마련된 이상, 이제는 이 개정안을 현행의 정간법과 서로 비교·고찰해 봄으로써, 각 조항이 가지는 의미와 취지를 살펴보고, 가능하다면 개선점 내지는 보완책까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게 된 것이다.

## II. 개정안 내용의 개관(규정형식 개관)

1. 이번 정간법 개정안은, 현행 정간법의 전반에 걸쳐서 개정을 시도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정간법의 2개의 큰 구성 요소 중,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4장) 부분만을 고찰의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언론사의 독점금지나 편집권의 독립등)에 대하여는 차후에 논의하기로 한다.

2. 개정안의 내용은 “침해에 대한 구제”부분에 관한 한 그동안 20여 년 간의 실무경험과 학자·실무가들의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수용하여 그 규정형식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보아 훌륭한 구성을 하고 있다.

이를 개괄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적용대상에 관한 규정(제2조)

개정안은 제2조(용어의 정의)부분에서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온라인신문”에 대한 규정을 삽입함으로써, 온라인신문도 적용대상이 됨을 분명히 하였다(9호). 이로써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는 자세를 보였고, 논쟁에 종지부를 찍게 하였다.

그 외에도 정기간행물사업자(12호), 독자(17호)의 개념을 규정하여 그 동안의 불명확함을 제거하였다.

#### 나. 언론침해로 인한 구제방법 전반에 관한 규정(제25조~제27조)

종래 언론침해의 민사법적 구제방법으로서 논의되어온 3가지 방법 즉, 손해배상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정보보도청구권 모두를 수용하는 총괄적인 규정을 두어, 종전의 학자들 및 실무가들의 주장을 진폭적으로 수용하였다. 각각의 권리를 규정함에 있어서도 논리적·시간적 순서에 따라 종전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읽기 쉽고, 찾기 쉽게 정리하였다.

#### 다. 중재의 주체(중재위원회)에 관한 규정(제28조~제30조)

중재의 주체인 언론중재위원회(제28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그 구성, 조직, 기능, 업무처리 방식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었다. 종전에는 시행령에 있던 내용을 일부 법으로 정리하였으며, 중재위원의 수를 늘리고, 위원장을 상임으로 한 것이 특징적이다.

추가적으로, 중재부(제29조) 및 사무처(제30조)에 대한 규정도 두어 체제를 통일하였다.

#### 라. 중재의 절차에 관한 규정(제31조~제42조)

중재의 신청(제31조)으로부터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절차를 진행(제32조)하고, 증거조사(제33조)를 하고, 사건에 대한 결정(제43조, 제35조, 제36조)을 하며, 나아가 사건이 법원에까지 이어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소 제기(제37조, 제38, 제39조), 심리(제40조), 집행(제41조) 및 가처분(제42조)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규정하였다.

종전에 산만하게 여기저기 나누어 규정되어 있거나 또는 법 이외에 규칙 등 다른 곳에서 규정된 것들도 종합·정리함으로써 일목요연하게 파악될 수 있게 하였다.

#### 마. 기타에 관한 규정(제43조~제46조)

기타의 부수적인 사항으로서, 종래 1개 조문의 일부로서만 지극히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던 시정권고에 관한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하나의 조문으로 정리하였으며(제43조), 나아가 종전

에 규정되어 있던 추후보도청구권(제44조)을 정리하고, 중재위원회 활동을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제45조) 및 국가로부터의 보조금에 관한 규정(제46조)을 두었다.

### Ⅲ.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규정내용 개관)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번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그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을 것이다.

1. 먼저 초중량급에 해당되는 것은 단연 “온라인신문”도 역시 정식의 언론기관(정간물)으로서 인정받아, 정간법의 적용대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른 언론환경의 변화가 법률에 수용되게 되었으며, 중재위원회의 앞으로의 역할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이다.

2. 다음으로, 중(重)량급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①위법한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역시 언론중재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제25조)과 ②정정보도청구사건에 대하여도 반론보도청구사건과 마찬가지로 중재위원회를 거쳐야만 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한 것(제37조①) 및 ③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을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하도록 한 것(제28조④)이다.

3. 다음, 중(中)량급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①정정보도청구권의 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불법행위 성립의 주관적 요건인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정정보도청구권을 일반의 불법행위가 아닌 특수한 불법행위의 한가지 유형으로 규정하였으며(제27조②), ②직권중재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한 것(제38조②)이 있고, 나머지는 여러 군데에서 숫자가 나오는 부분을 재검토하여 대체적으로 이를 늘이거나, 연장함으로써, 주로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한 점을 들 수 있다.

즉, 숫자가 변경된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중재위원회의 위원의 수를 60인 이상 110인 이내로 하고(제28조②), (현행은 40인 이상 80인 이내)
- ② 중재위원 중 5분의 1이상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위촉하고(제28조②), (현행은 규정이 없으나, 실무관행상 고려)
- ③ 중재부의 의사결정은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제29조③), (현행은 5분의 3이상 출석과 출석 3분의 2의 찬성 : 시행령 제27조①)
- ④ 중재위원회에서의 제소기간에 관하여,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보도가 있는 날로부터 6월로 하고(제31조①), (현행은 안 날로부터 1월, 있는 날로부터 6월)
- ⑤ 중재기간에 대하여, 신청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종료하도록 하고(제32조②), (현행은 14일 이내)
- ⑥ 법원에의 제소기간에 관하여, 불성립, 각하·기각 결정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제38조①), (현행은 불성립·이의신청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 ⑦ 법원에서의 심리기간에 관하여, 제소된 날부터 3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고(제40조③), (현행은 반론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제4조에 따라 심판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월 이내)
- ⑧ 추후보도청구의 청구기간에 관하여, 무죄 등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게재청구

를 할 수 있도록 하고(제44조①), (현행은 1월 이내)

⑨ 시정권고에 대한 불복절차에 있어서, 시정권고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도록 하였다.(제43조④), (현행법률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음)

다만, 앞서본 숫자에 관한 규정들이 모두 피해자의 권리행사가 보다 더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향에서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유일하게 이와 반대로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다.

즉, 중재위원회에 출석요구를 받고 출석하지 못하여 일정한 불이익을 받도록 되어있는 경우(제32조③)에 그 사유가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중재절차의 속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제32조④), (현행법은, 그 신청기한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4. 마지막으로, 위에서 언급한 이외의 나머지의 규정들은 일단 경량급에 해당된다 할 수 있는데, 이 규정들은 대체적으로 종래, 대통령령이나, 대법원규칙, 중재위원회사무처리규칙, 또는 법원의 판례나 실무상의 관행에 따라 행해져오던 것들을 정리하여 규정으로 옮긴 것들이다.

#### IV. 개정안의 검토

이상에서 개괄적으로 살펴본 바를 토대로 하여, 아래에서 개정안의 내용을 그 규정의 순서에 따라 좀더 상세하게 검토해보기로 한다.

##### 1. 적용대상에 관하여

가. 정간법 개정안은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그 적용대상인 언론매체에 관하여, “정기간행물”의 개념을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되는 “신문, 통신, 잡지, 기타 간행물”이라고 규정하고(제1호), 그 후, 통신을 일반통신과 특수통신으로 나누어 규정하였으며(제7호, 제8호), 제9호에서 “온라인신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전파하는 간행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소위 “온라인신문”의 개념을 정식으로 법전상의 용어로 격상시켜 규정하고, 이 역시 정간법의 적용대상 즉 정정·반론보도 등의 청구 대상이 됨을 명백히 하였다.

이번 정간법의 개정안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하나만을 고른다면, 단연 이 규정, 즉 “온라인신문”에도 정간법이 적용되게 된 것을 고르는 데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 규정의 신설에는 몇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즉 종래 과학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하여 우리사회에 있어서 의사소통 내지는 여론형성의 과정이 크게 변화되었다. 종래 여론 형성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던 인쇄매체 즉 “오프라인”의 역할이 감소 추세에 있게 되고, 이 역할을 전자매체 즉 “온라인”의 역할이 날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게 된 것이다.

사회현상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정간법은 그 적용대상을 인쇄매체에 국한시킴으로써, 피해자의 권익보호에 커다란 허점을 들어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던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온라인”매체의 특성 즉 “쌍방향성”을 근거로, 피해자가 스스로 자기의 주장을 발표할 기회가 부여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현행대로 정간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야 한다는 반론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대다수의 견해는 명문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본 개정안은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인 것이다.

#### [평가]

필자는 종래 개인적인 견해로서, 정간법의 적용대상에, 명문으로 온라인 신문을 규정해 넣지 않더라도, 적어도 언론피해로 인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당연히 온라인 신문도 포함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즉 정간법의 대상으로 규정을 두는 것은 등록이나 기타 제제 등 행정적인 규제를 하는데 필요한 것임에 지나지 않고, 언론피해로 인한 세 가지의 민사적인 구제방법 중에서 최소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정정보도청구권은 일반법인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인정되고 있는 것을, 주의적으로 친절하게 정간법에 다시 규정해 준 것이지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정간법에 온라인신문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해서, 언론피해로 인한 구제 방법이 인정될 수 없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반론보도청구권에 대하여도, 이 권리의 성질을 정간법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된 권리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보지 않고, 민법에 규정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배상의 특수한 한 가지의 경우로 보거나, 또는 백보 양보하여 창설적인 규정으로 보더라도 그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넓혀서, 인쇄매체로부터 전자매체로까지 확장시키는 것은 법 논리상 무리한 해석이 아니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법리적인 논쟁이야 여하튼간에, 이제 이러한 논의는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사회의 변화에 순응한 법률의 진보로서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아쉬운 점은 “온라인신문”에 관한 개정안의 규정으로서는 제2조 9호에서 그 의미내용을 정의한 것이 유일한 것이자 전부이다. 필시 온라인 신문이 중재의 대상이 됨으로써 앞으로의 실무상 현재는 예상하기 어려운 수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진다. 아직 온라인 신문의 틀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만큼, 상세한 규정을 두기는 어려웠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규정들은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앞으로의 연구·검토 과제일 것이다.

나. 정간법 개정안은, 손해배상,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 정간법상의 피해구제의 상대방으로서, 현행법상으로는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언론사)”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모두 “정기간행물사업자”라고 바꾸어 규정하고(제25조, 제26조①, 제27조①), 제2조 제12호에서 그 용어의 정의를 “정기간행물의 발행을 목적으로 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간법의 전신인 언론기본법에서는 정간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으로 되어 있던 것을 1995. 12. 30. 법개정 시 현행법과 같이 개정되었고 개정안은 이를 다시 손질한 것이다.

#### [평가]

이 규정은 최초 언론기본법상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규정이 우리 법이 모범으로 삼은 독일의 언론법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여 옮겨 놓았던 것이었는데, 우리의 실정에 맞추어 진화를 거듭한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다.

개정안의 태도는 우리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여겨지며, 이 규정을 보면서 23년 전 언론기본법이 생기고, 이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가 기능을 시작한 이래, 우리의

몸에 맞는 옷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일말의 감회를 느끼게 한다.

## 2. 언론침해로 인한 구제방법에 관하여

개정안은 현행법체계상 언론침해로 인한 민사법적인 구제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3가지의 권리 즉 손해배상청구권,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전부에 관하여 이를 구제방법으로 규정하였고 따라서 위 3가지 모두를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대상으로 인정하였다. 이를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손해배상청구권

개정안은 제25조에서 “정간물사업자”가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재산상 또는 정신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위 규정이 없더라도 민법상 일반규정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규정에 따라 당연히 인정되는 것을 언론침해의 경우에 특화하여 특별히 따로 주의적으로 친절하게 규정해 준 것으로써, 그 자체로써 법률상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규정의 커다란 의미는 오히려 다른 곳에 있다.

즉, 개정안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해자는 …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게”하였고, 나아가 개정안 제3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법원에 바로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데에 있는 것이다.

이를 현행법의 규정과 비교하여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 현행법의 규정에 의하면, 언론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중재위원회의 중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로지 법원에의 제소를 통해서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원래 이와 같이 규정한 취지는, 손해배상청구 그 중에서도 특히 언론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그 침해원인과 피해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의 입증이 간단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의 범위 즉 손해배상액의 산정 역시 크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법률전문가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또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심리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나아가 철저한 증거조사의 수단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중재위원회에서 처리토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위와 같은 상황이 현재에 있어서 크게 변화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손해배상의 청구를 중재위원회의 중재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중재위원회가 그동안 20여 년 동안 해온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중재위원회로 하여금 손해배상의 문제까지도 다루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중재위원회가 언론피해구제에 관한 한 “종합병원”의 역할을 하도록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역시 앞서본 손해배상청구사건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의 “필요적” 중재 대상으로까지는 인정하지 않고, “임의적” 중재 대상으로만 인정하였다. 즉 피해자는 선택적으로 중재위원회를 거쳐 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이다.

### [평가]

손해배상의 청구까지도 중재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 나아가 중재의 대상으로 할 경우에 이를 법원에의 제소를 위한 필요적인 것으로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현재 우리나라의 언론 환경 및 중재위원회에 대한 사회의 평가 여하에 따라 결정될 순수히 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점에 관하여 개정안은 “절충적”인 태도를 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손해배상까지도 중재의 대상으로 하되 이를 임의적인 것으로 한발 짝 물러난 태도를 취한 것이다.

일응 합리적이고 타당한 자세라고 여겨진다.

다만, 한가지 주의할 점은, 손해배상의 청구가 앞서 본바와 같은 간단치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중재위원회에서 이를 심리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원인 즉 인과관계와 손해의 범위 즉 배상의 액수가 “비교적 분명한 경우”에만 그 심리의 대상으로 하여 중재에 임할 것이 요구된다.

자칫 그렇지 아니한 경우까지도, 의혹이 지나쳐서 중재를 성립시키려고 노력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반론보도나 정정보도의 문제의 해결에까지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 나. 반론보도청구권

개정안은 그 제26조에서 ①항부터 ⑪항에 걸쳐서, 반론보도에 관한 규정을 상세하게, 그리고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알기 쉽게 현행법의 규정들을 종합·정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의 규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현행법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과, 다른 하나는 개정안의 형식은 신설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종래 판례나 학설 또는 실무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오던 것을 정리하여 조문화시킨 것들이 있다.

먼저 전자의 것으로는 제3항의 청구기간에 관한 것이다.

즉 현행법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을 “3월 이내”로 확장하였다. 이는 물론 권리자가 비합리적으로 권리행사기간을 제약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 후자의 것으로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① 반론보도의 상대방을 “정기간행물사업자”로 규정(제1항)함으로써, 우리의 언론현실에 부합되도록 하였다. 이점은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② 제2항에서는 반론보도의 요건으로서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하며”, “보도내용의 사실여부를 불문한다”고 명백히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순수히 법 논리적인 주의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반론보도청구권이라는 권리의 성질상, 피해자에게 반박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그 본래의 취지인 만큼 당연히 여기에는 언론의 고의·과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고, 또한 보도내용이 사실인 경우에도 반론보도가 인용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이는 종래 판례와 학설이 일치되어 인정한 것을 일반인의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명백히 해준 것이다.

③ 제4항에서는, 당사자 적격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대표자가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당사자 능력을 확대하고 있는 바, 이 역시, 종래의 학설이 인정하고 판례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론을 규정화 한 것이다.

④ 제7항 단서에서는, 반론보도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9일 이내에 하도록 하되, “이미 편집·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음 발행호에 게재하도록”하였다. 이 역시 종래의 통설적 견해다.

⑤ 제8항에서는, 반론보도의 크기에 대하여 규정하는 바, 반론의 취지를 전달하는 데에 필요한 합리적 범위 안에서 “기사의 크기, 위치, 형식 등이 동일하거나 균형을 이루도록”하여야 한다고 하여 “실질적” 형평을 이루도록 하였다.

이점에 관하여 현행법 제16조 제5항은 “반론보도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인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너무나도 “형식적”으로 “글자수”를 기준으로 산술적으로 결정하려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현행법의 입법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잘못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바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으나, 행정부 검토과정에서 이와 같이 이상한 조문으로 되어 버렸으나, 법원의 판례상으로도 이러한 규정의 잘못은 인식되어 실질적으로는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해석되고 있었던 것을,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⑥ 제9항에서는 반론보도의 형식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형식으로 하여야한다” 규정하여, 반론보도의 본질에서 우러나오는 당연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는 일반 국민에 대한 계몽적인 의미와 더불어, 언론기본법 시행초기, 반론권의 개념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시절의 필요 없는 논쟁을 마무리하기 위한 조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⑦ 개정안은 제11항에서, 반론보도의 청구가 거부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경우들을 망라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중의 대부분은 현행법의 여기저기에 산재하여 규정된 것을 한군데로 모아 정리하였고, 일부는 종래 판례에 의하여 확립된 이론을 조문화하였다.

즉 후자의 예로서는 제1호에서 “후속보도에 의하여 충분한 반론이 이루어진 경우”를 들고, 제4호에서 “광고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 [평가]

반론보도의 청구기간에 대하여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을 “3월”로 바꾼 것에 대하여는, 정답이 있을 수 없고, 견해에 따라 각자 다른 숫자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기간이 너무 짧으면 권리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로 될 것이고, 반대로 기간이 너무 길면, 언론기관을 너무 장시간 동안 불안정한 위치에 두는 결과로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역시 우리나라 언론현실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이나, 최소한 일간지의 경우에는 개정안의 3월이 너무 길지 않은가 하는 느낌이 든다.

나머지 규정들은 모두 종래의 판례·이론을 정리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 다. 정정보도청구권

① 현행법의 규정 하에서는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규정은 따로 둔 것이 없고, 다만 제18조 제1항에서, 중재신청의 대상으로 “정정보도”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제27조에서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하여 일반적이고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② 즉 제1항에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둔 다음, 제2항에서는 정정보도청구의 요건으로서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성”을 요하지 않는다고 명문으로 규정하여, 이 정정보도청구권의 법률적 성질을 명백히 하고 있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즉, 중전의 일반적인 견해에 의하면,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권리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

한 손해를 배상하는 방법중의 하나로서 금전배상이 원칙이지만, 이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로서 특별한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구제수단으로 이해되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정정보도 역시 민법상 불법행위의 권리구제수단인 이상, 그 보도에 고의·과실의 주관적 위법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도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언론보도에 관련하여 고의·과실을 입증하기 위한 특별한 절차를 진행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나, 또는 최소한 고의·과실은 이를 추정해버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볼 수 있었다.

그리하여, 개정안은 이러한 논의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명문으로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이로써 정정보도청구권을 민법의 규정보다는 훨씬 완화된, 특별한 종류의 권리로서 그 위치를 자리매김해 준 것이다.

③ 다음으로 제3항에서는, 정정보도의 형식에 관하여, 이는 “독자투고의 형식이나 피해자의 진술형식”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주의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제4항에서는 정정보도청구가 거부될 수 있는 사유를 반론보도의 경우와 대비하여 상세히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청구가 거부될 수 있는 예로서 반론보도의 경우에는 반론보도의 내용이 특별한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고서도(이는 독일에서의 판례에 의하면, 인증 즉 “증인이 아닌 서면만의 심사에 의하더라도”라는 의미라고 한다)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음에 반하여(개정안 제26조 제11항 2호), 정정보도의 경우에는,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라고만 되어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반론보도청구권의 성질에서 유래되는 당연한 것이지만, 일반인의 경우에는 간과되기 쉬운 점으로서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 [평가]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개정안의 내용들은 종전의 판례·이론을 수용하여 정리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그러나, 막상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가장 중요한 개정내용은 정정보도의 청구 역시 반론보도의 청구와 마찬가지로,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한 데에 있다(개정안 제37조 제1항).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행법에 있어서는, 반론보도청구에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하면서, 정정보도에 대하여는 “임의적”, “선택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중재위원회의 위상을 한층 더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점 역시, 정책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되지만, 현재 선택적으로만 중재위원회가 다루고 있는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처리 실태를 살펴보면, 이제는 정정보도청구 사건까지도 필요적 중재대상으로 하는 데에 하등의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되고, 오히려 언론사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개정안의 이점에 대한 태도는 적절한 것으로 여겨진다.

### 3. 중재의 주체에 관하여

개정안은 중재의 주체를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 그리고 사무처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가. 먼저 개정안 제28조는 중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기본적으로는 현행법과 같은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다음의 3가지 점에서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즉,

- ① 중재위원의 수를 현행 40인 이상 80인 이내에서, 60인 이상 110인 이내로 늘리고(제2항 전단)
- ② 중재위원의 5분의 1 이상은 시민·사회 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하도록 하며(제2항 후단)
- ③ 중재위원장은 현행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하도록(제4항) 한 것이다.

나. 다음 개정안 제29조는 중재부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현행법의 기초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제3항은 중재부의 의사결정 방법에 관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현행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5분의 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완화하여, 법률로 격상시켜 규정하였다.

다. 끝으로 개정안은 제30조에서, 사무처에 관한 중전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것들을 정리하여 법률로 규정하였다.

#### [평가]

중재위원의 수를 늘린 것은 사건의 증가로 인한 중재부 증설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불가피하게 여겨진다. 중재위원의 일부를 시민·사회 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한 것은 현재 실무상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서 별 문제는 없다.

위원장의 “상임”여부는 여러 가지 요인들(정치적 고려, 예산상의 문제, 유사기관과의 위상 문제 등)을 종합하여 결정할 것이지만, 앞서본 바와 같이 여러 면에서 (정정보도까지 필요적 중재대상이 되고 손해배상청구도 임의적 중재대상이 된 점 등) 중재위원회의 위상이 격상된 만큼, 위원장의 상임화는 필수적이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중재부의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현재의 시행령에의 규정은 그 형식이 적절치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역시, 중재부장에 어떤 사정이 있을 때에는 결정할 수 없는 불합리가 생기고, 또한 5분의 3이상 출석은 그런대로 수긍할만 하나 (이는 실제로 5인의 중재부인 경우에는 과반수의 출석과 결과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이나),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은 지나치게 엄격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의사결정 방식에 너무나도 크게 어긋난다. 즉 5인의 위원이 모두 참석한 경우에는 4인의 찬성이 필요하고, 4인이 참석한 경우에는 3인의 찬성이 필요하며, 3인이 참석한 경우에는 2인의 찬성이 필요하며, 결국에는 반대자로서는 어느 경우에도 1인의 여유밖에는 없는 셈이다.

#### 4. 중재의 절차에 관하여

이는 다시 중재위원회에서의 절차 및 법원에서의 절차로 나누어진다.

##### 가. 중재위원회에서의 절차

개정안은 이 부분을 다시 중재신청(제31조), 중재절차(제32조), 증거조사(제33조), 중재결정 등(제34조, 제35조, 제36조)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즉,

- ① 중재신청기간을 현행 안 날로부터 “1월”에서 “3월”로 늘려서 규정하였다. 이점에 대하여

는 앞에서 이미 보았으므로 여기에서는 더 이상 언급을 생략한다.

② 중재절차의 종료는 현행 14일(단, 직권중재결정의 경우는 21일)에서 21일로 늘려 규정하였다. 현재의 14일은 너무 촉박하여, 중재실무상 피신청인이 1회 불출석하여 1주일 후에 2회 기일을 지정할 경우에는 실제상 1회밖에 중재기일을 열 수 없는 불합리를 감안한 것이다.

③ 중재의 당사자가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게 된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그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면 “기한제한 없이 언제든지” 중재절차의 속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정상의 허점이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여,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명하여 속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머지 규정들은 모두, 소송절차의 진행에 관한 기본규정인 민사소송법의 규정 중에서 중재절차에 필요한 규정들을 추출하여 정리한 것들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 [평가]

중재신청기간을 안 날로부터 3월로 연장한 것은 언론 현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이나, 적어도 일간 신문의 경우에는 약간 문제로 될 수 있음을 앞에서 이미 지적하였다.

#### 나. 법원에서의 절차

개정안에서는 이 부분을 다시 소의 제기와 관련된 부분(제37조, 제38조, 제39조), 심리와 관련된 부분(제40조), 집행에 관한 부분(제41조), 가처분에 관한 부분(제42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중요한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법원에서의 제소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경우에는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필요적 전치요건으로 하였고,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이를 임의적 전치요건으로 하였다(제37조 제1항).

이는 개정안의 핵심적 개정 내용중의 하나인바, 이에 관하여는 앞에서 살펴보았으므로, 여기에서는 논의를 생략한다.

② 법원에의 제소기간에 관하여 현행법은 불성립된 것을 안 날로부터 (또는 이의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를 제기토록 한 것을 “30일”로 연장하여 규정하였다.

③ 소위 중재부의 직권중재결정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제18조 제7항 단서) 이후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당사자는 다시 법원에 제소하는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할 수밖에 없어, 이중의 부담을 준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그리하여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소 절차가 필요 없이,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인지 첨부 등 최소한의 절차만을 거쳐 바로 법원에서의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제38조 2항).

④ 법원에서의 심리 방법에 관하여 현행법은, 독일의 입법례에 따라 “가처분 절차”에 의하도록 하여 소송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실무 관행에 의하면, 가처분 절차에 의하더라도 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본안소송 절차와 별다른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정보도와 반론보도가 함께 제소된 경우 전자는 본안, 후자는 가처분 절차가 적용되는 등 오히려 불편한 경우마저도 생기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리하여, 개정안은 이 현실을 직시하여 차라리, 모두 본안소송 절차에 의하되, 가처분 절차의 핵심적인 내용인 “증명”이 아닌 “소명”만으로도 청구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

으로 소송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제40조 제2항).

그리고 손해배상, 정정보도, 반론보도의 소가 “병합”된 경우에 소송의 신속을 위하여는 이를 “분리”하여 일부만의 판결을 할 수도 있으며(제40조 제3항), 인용판결의 선고 시에도, 반론보도의 경우에는 “반드시”, 정정보도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집행 선고를 붙이도록 하고 있다(제40조 제4항).

⑤ 또한,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청구를 인용한 판결의 집행은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한 것을 명문화하여, 종래의 이론 및 판례를 그대로 수용하였다(제41조 제1항).

⑥ 개정안 제42조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가치분을 언론침해의 경우로 특화하여 따로 규정함으로써 일반인들의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 [평가]

법원에서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들은 모두 언론사건의 특수성에 기하여 가능한 한 절차를 신속·간이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나머지 규정들은 종래 법률의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하여 의문이 있던 점들에 대한 법원의 판례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학설의 내용을 조문화한 것들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 5. 기타의 조항들에 관하여

위에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들을 망라해 보았는바, 개정안은 마지막 4개의 조문들을 시정권고, 추후보도청구권, 중재위원회 활동의 국회에의 보고 및 보조금에 관한 것으로 할당하고 있다. 즉,

가. 개정안 제43조는, 현행법 제18조 제8항에서 지극히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면서, 시정권고를 할 수 있는 경우(제1항), 시정권고의 기준(제2항), 시정권고에 대한 재심의 청구(제4항), 및 재심의 절차(제5항)와 재심인용의 경우의 조치(제6항), 시정권고의 효력(제7항) 및 외부공표(제8항) 등을 세밀히 규정하여 종래의 미비점 및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을 법률로 보완하였다.

나. 또한 개정안 제44조는 현행의 추후보도청구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정리하였으나 다만 그 청구기간을 현행 1월에서 3월로 연장하였다(제1항).

다. 그리고, 개정안 제45조는, 현재에도 법률의 명시적인 규정은 없었으나, 실제로는 매년 이루어져온, 국회에 대한 보고 및 출석·의견진술의 현실을 법규정에 옮겨 규정하였다.

라. 끝으로 개정안 제46조는 현행과 같은 보조금 규정을 존치시켰다.

#### [평가]

위 규정들은 모두 현재 명문의 법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도 합리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조문화 한 것으로 별문제는 없으며, 추후보도 청구기간을 3월로 늘인 것도 역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려는 개정안의 일반적인 경향과 일치되는 것이다.

### V. 개정안에 대한 종합적 평가 및 개선점

#### 1. 종합적 평가

지금까지 상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온라인 신문도 포함시키고, 손해배상청구까지도 중재의

대상에 포함시킨 이번의 정간법 개정안은 중재위원회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려서 이제는 언론에 의한 권익침해사건에 관한 한 중재위원회로 하여금 “종합병원”의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3년 전 중재위원회가 처음 발족할 당시 그 중재대상은 “반론권”에 한정되어 있었고, 그것도 “반론권”이라고 직접 표현하지 못하고,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용어를 빌려 사용하던 시절을 돌이켜 보면, 문자 그대로 금석지감을 금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하여 요즈음 논의되고 있는 “언론피해구제센터”까지도 중재위원회에 설치되게 되면, 언론피해구제절차에 관하여 “one stop service”까지도 제공하는 기구로 성장할 것이 예상된다.

## 2. 규정의 “내용상”의 개선점

가. 개정안을 그 규정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크게 잘못된 점이, 빠진 점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현재의 상황 하에서는 최선의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는,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종래 현행법의 규정 및 중재위원회의 실무과정을 상세히 검토하고 연구한 학자들 및 실무자들의 견해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대폭적으로 수용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는, 위와 같은 내용일 수도 있지만,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내부적으로는 중재위원회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이 열성적으로 개정작업에 참여하고 자료를 제공해 주는 등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나. 다만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나 실무경험의 미숙적 등 아직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되기는 하지만, 앞으로 여전히 호전되고 실무경험이 축적된다면 내용상으로 보완되어야 할 점이 두 가지 보여진다.

하나는 앞서 본 중재위원회의 위상의 격상에 발맞추어 중재위원의 위촉을 문광부 장관에서 대통령으로 격상시켰으면 하는 점이고,

둘째는 온라인 신문이 중재의 대상으로 됨에 따라 실무상 발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미리 예상하고 정리하여 이에 관한 규정들을 설치·보완하는 문제이다.

## 3. 규정의 “형식상”의 개선점

개정안의 내용에 비하여 형식의 면에 있어서는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점이 눈에 띈다.

가. 첫째는, 단연코 언론중재위원회에 관한 규정들을 방송·정간물을 통합하여 하나로 묶고, 나아가 이를 하나의 단일법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은 자명하다.

① 현재는 같은 내용의 규정들이 그 언론매체에 따라 따로 정간법과 방송법에 나누어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다.

② 지금 마련되어 있는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안에 이미 손해배상,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규정의 형식도 완벽하게 되어 있어서, 체제상 약간의 수정만을 가하면 바로 훌륭한 단일법으로 완성될 수 있을 만큼의 성숙도를 충분히 구비하고 있다.

③ 현행의 정간법의 규정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즉 “정간물의 소유의 독점의 금지와 편집의 독립”에 관한 규정(2장 및 3장)과 “침해에 대한 구제”에 관한 규정(4장)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그런데, 후자에 대하여는 크게 정치색이 없고 규정의 합리성만이 주로 문제되는데 반하여, 전자에 대하여는 크게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결과로서, 후자의 개정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막상 전자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후자의 개정마저도 성공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따라서 양자의 분리가 필요하고도 타당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단일법의 제정이 요망된다. 그 명칭으로는 “언론피해구제법” 또는 “언론중재위원회법” 등이 거론되고 있었다.

나. 둘째는 개정안에 있어서 “규정의 순서 내지는 위치”에 관한 몇 가지의 문제점이다. 즉,

① 개정안은 제2조에서 “온라인신문”의 개념을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제1호에서 “정기간행물”의 개념을 규정하고,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신문의 개념을 규정하고 제7호와 제8호에서 통신의 개념을 규정한 다음에 규정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 이어서 제10호에는 잡지의 규정으로 넘어가는 순서에 비추어서 적절치 않은 느낌이 든다.

즉 개정안이 “온라인 신문”도 신문의 일종으로 인정하고 중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면, 그 규정의 위치도 “통신의 다음”이 아니라 “신문의 다음” 즉 제9호가 아니라 제7호로서 규정하였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② 다음으로 개정안은 언론침해에 대한 민사상의 구제수단 세 가지를 손해배상청구권(제25조), 반론보도청구권(제26조), 정정보도청구권(제27조)의 순서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아 중재위원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원래적인 임무는 반론보도청구의 심리에 있었고, 또한 반론보도만이 필요적 중재의 대상인 만큼 이를 맨 처음에 규정하고, 이어서 정정보도청구를 규정한 다음(여기에는 반론보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할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더욱이 개정안에 의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는 중재위원회의 임의적 중재의 대상임에 불과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③ 마지막으로 중재위원회가 중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손해배상, 정정보도, 반론보도라는 내용을 규정하는 형식 및 그 위치에 관해서이다.

현재의 개정안은 이를 제31조(중재신청)의 조항에서 규정하면서 ①항에 “피해자는 … 손해배상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또는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 3월 이내에 …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의 전체 체계상으로 보면, 제31조의 중재신청의 조항에는 그 신청기간을 규정함에 근본취지가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중재위원회의 중재대상이 어떠한 권리인지에 관한 규정은, “중재위원회의 임무 내지는 위상”을 선언적으로 최초로 규정하는 조항인 제28조에서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제28조 제1항을 “정기간행물의 보도로 인한 반론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의 분쟁을 중재하고, 정기간행물의 게재 내용에 대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둔다”고 수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 VI. 맺는말

이번의 정간법 개정안은 현재까지의 학설의 발전, 실무의 경험 등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의견이면 이를 가능한 모두 수용한 아주 모범적인 개정안인 것으로 평가된다.

지적인 바와 같이 약간의 사소한 문제점들이 나타났지만, 이를 수정·보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안이 통과되어 보다 합리적인 언론중재제도가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